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84

발의연월일: 2022. 1. 26.

발 의 자: 강민정・양정숙・유정주

윤영덕 · 장경태 · 최강욱

양이원영 · 강득구 · 서동용

도종환 · 이탄희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, 국정감사 등을 받고 있음.

특히,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2. 7. 21.)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 될 것으로 보임.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,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.

이에 기관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 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의 충 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 (안 제37조제1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5. 교육위원회
  - 가.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개편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발의, 제출 또는 제안되는 안건 및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부터 적 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	
항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5. 교육위원회</u>	<u>5. 교육위원회</u>
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	가.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
	<u> </u>
	나.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
	<u>속하는 사항</u>
6. ~ 17. (생 략)	6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